

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57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6767호, 2000. 3. 28)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정비 : 3개 사무
 - 보상금액의 산정(안전관리과)
 - 보상금 지급의 통지(안전관리과)
 -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(안전관리과)
-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삭제 : 1개 사무
 - 소유권 이전등기(안전관리과)

□ 근거법령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안전관리과 소관 제28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제30호를 삭제하며, 제31호를 제30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
안 전 관理과	28	○보상금액의 산정	법률제3782호하천법 증개정법률부칙제2조 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 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령 제8조
	29	○보상금 지급의 통지	동법시행령 제9조
	30	○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	동법시행령 제1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조 표

(별표1)

현 행				개 정 안			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령
안전 관리과	1-27	(생 략)		안전 관리과	1-27	(현행과 같음)	
	28	○ 보상금액의 산정	법률 제378 2호하천법 중개정법 률부칙제2 조의규정 에의한하 천편입토 지보상에 관한규정 제9조		28	(현행과 같음)	법률제378 2호하천법 중개정법률 부칙제2조 의규정에의 한보상첨구 권의소멸시 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 입토지보상 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 령제8조
	29	○ 보상금 지급 통지	동규정 제 11조		29	○ 보상금 지급의 통지	동법시행령 제9조
	30	○ 소유권 이전등기	동규정 제 13조제2항 및 제3항			(삭 제)	
	31	○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	동규정 제 14조		30	○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	동법시행령 제11조

관계법령 발췌문

[지방자치법]

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(생략)

[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]

제8조(보상금액의 산정) ① 시·도지사는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치를 기준으로 한다.

②③ 생략

제9조(보상금 지급의 통지) 시·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) ① 시·도지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 까지는 당해 편입토지의 소유자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생략